

대구지방법원 2019. 4. 5 선고 2017가단12612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

담당변호사 류제모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어녕

변론 종결 2019. 3. 22

판결 선고 2019. 4. 5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2,586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관하여 2017. 9. 1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가. 당사자의 지위

1)원고는 대구 남구 C 대 4,038,31rf(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.)의 96.88%의 공유지분(1183.4921/1221.6)을 소유한 법인이고,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된 상가건물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.)을 소유한 사람이다.

2)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고 대지를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고,그 소송은 원고의 청구대로 전부 인용되고 확정되었다(대구지방법원 2007가단47688호, 대구지방법원 2010나2709호, 대법원 2010다87467호,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참조).

나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

1)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.) 제7조는 '대 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있다. '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시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그리고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의 시가는 2,586,000원이다.

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,586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(조정신청서) 부분 송달일인 2017. 9. 13.자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 단

갑제1,2,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.

한편 집합건물법 제7조의 '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'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응하는

대지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신종화

별지